신고자보호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가이드북



신고자보호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가이드북



Ⅰ 신고자 보호제도란 5

1. 신고제도 6
2. 신고자 보호제도 10
3. 신고자 보상제도 19

Ⅱ 신고단계별 업무담당자 유의사항 25

1. 신고 상담·접수 단계 26
2. 신고사건 심사·조사 단계 31
3. 신고사건 처리단계 36

V 별 첨 69

IV 신고자 보호 사례 57

53 3. 보호사건 처리단계

47 2. 보호사건 조사·확인 단계

46 1. 보호사건 상담·접수 단계

III 보호사건 발생시 업무담당자 유의사항 45



신고자보호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가이드북



I

신고자 보호제도란

1. 신고제도
2. 신고자 보호제도
3. 신고자 보상제도



I 신고자 보호제도란

1. 신고제도

›› 신고제도의 의의

신고란 누구든지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이나 공공부문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는 외부로 표출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은폐된 채 고질적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는 사회적 신뢰저하를 초래하고 막대한 비용(Social cost)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고사례

사례 1
혈액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전염병 환자로부터 채혈된 부적격 혈액을 발견하고도 폐기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약사에 대가를 교부받고 공급하는 등의 부패신고 사건을 조사하여 수사기관에 이첩하였고, 이를 계기로 혈액검사 방법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이 마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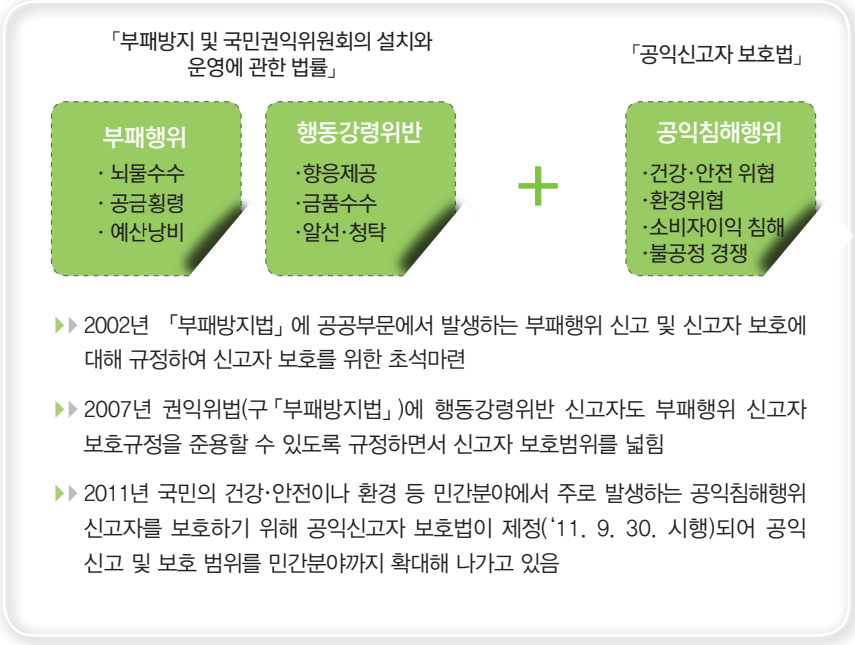
사례 2
면세유 부정유통을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이 어민들과 담합하여 면세유를 개인 승용차에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의 면세유 부정수급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형사처벌이 이뤄졌고, 권익위원회에서 면세유 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 신고의 유형

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공익침해행위신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공직자의 행동강령위반 행위 및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법에 의하면 신고자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부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당이득을 수수한 경우 권익위원회에 행동강령위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적부문 외에도 사적부문에서 국민의 안전 및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공익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2002년 「부패방지법」에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해 규정하여 신고자 보호를 위한 초석마련
- 2007년 권익위법(구「부패방지법」)에 행동강령위반 신고자도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신고자 보호범위를 넓힘
- 2011년 국민의 건강·안전이나 환경 등 민간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11. 9. 30. 시행)되어 공익신고 및 보호 범위를 민간분야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음

외부신고·내부신고

신고는 조직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부패행위 등을 인지하여 신고하는 외부신고와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내부에서 발생한 침해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신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의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는 구조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곤란해 그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부 신고 제도는 조직 내부 구성원의 자발적 정보제공으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부패행위 및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단초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외부신고와 내부신고의 의미

- 외부신고는 조직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부패 및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하는 행위
- 내부신고(Whistleblowing)은 조직의 구성원이나 조직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위법·부정한 방법으로 국민 또는 정부를 속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항의하는 행위를 의미



›› 신고사건 처리절차

신고자가 인지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법에서 정한 신고기관에 신고한 경우, 조사기관 등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적법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받은 기관은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신고 접수	조사·확인	사건 처리	통지
부패신고	• 권익위 • 조사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내용 등 확인 •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부패행위여부 확인	• 고발 • 이첩 • 관계기관송부 • 종료	신고자에게 조사처리 결과 통보
행동강령위반신고	• 권익위 • 해당공공기관의 장 •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내용 등 확인 •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행동강령위반 여부 확인	• 위반통보 • 이첩 • 관계기관송부 • 종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공익침해행위신고	• 공익침해 기업 • 조사기관 • 수사기관 • 공공단체 • 국회의원	•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내용 등 확인 •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 법률위반 여부 확인 •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 확인	• 조사권있는 경우 -신고사건 처리 • 조사권 없는 경우 -조사권있는 기관으로 이송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2.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조직의 부패행위 등은 은밀히 조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통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패행위의 적발 및 규명을 위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문제를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 및 관계인들의 정보제공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적발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부신고자는 조직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혀 배척당하거나, 신분상 불이익 등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중요합니다.

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 보호체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단계에서부터 신고처리과정까지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고준비단계에서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할 것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에서 보호하는 신고인 경우 신고 처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로 인해 신고자의 생명 · 신체의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로 조직에서의 신분보장이 위태롭거나 불이익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신분보장 조치 및 경제적 · 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신고자 보호체계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	신변보호	그 밖의 보호조치
• 신분공개 여부 확인 • 징계요구 (당해기관) • 고발	• 신분상·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처분 금지 • 원상회복 등 조치 요구 또는 권고 • 인사교류요구 • 징계요구 (당해기관) • 과태료부과 • 형사처벌	• 신변보호요구 (경찰청, 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 신변보호조치 및 해체	• 책임감면 • 협조자 보호

비밀보장

신고자의 비밀보장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이첩·송부·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공개 여부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신고자 의사에 반해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단계별 비밀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 인적사항 공개 및 보도 금지

신고자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공개한 경우 담당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관련규정

▶▶ **권익위법 제64조**

①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누구든지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보호되고 있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2조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 접수·이첩·송부·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등의 신분이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신분보장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조직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 · 행정적 차별을 받을 수 없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신분상 불이익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 직위해제, 강등, 승진 및 이에 준하는 조치
- 전보, 전출 및 이에 준하는 조치
- 임금의 차별지급, 집단 따돌림, 업무미부여 등 근무조건상 차별

▸▸ 경제적 불이익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행정적 불이익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신분상 불이익 처분 금지 및 보호조치

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권자는 신고자가 전직, 전출 ·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신고로 인해 경제적 · 행정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또는 계약 등의 잠정적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상회복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담당자는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권익위법 제62조 (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15조)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제22조)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보호조치의 신청(제17조)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제16조)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변보호

● 신변보호조치 요구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자신과 그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신변보호조치 및 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권익위법 제64조**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신변보호조치 요구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정법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 신변안전조치

-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그 밖의 보호조치

● 책임감면 등

신고로 인해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한 신고인 경우 그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게 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관련규정

▸▸ **권익위법 제66조**

① 이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 협조자 보호

신고자 외에 조력자도 신고단계에서부터 조사·수사시 진술 및 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협조자도 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보장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권익위법 제65조**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3. 신고자 보상제도

부패 및 공익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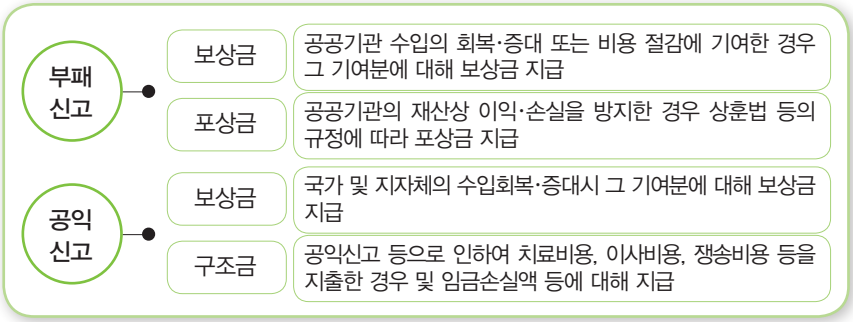
부패신고자 보상 및 포상

보상금은 부패행위 등으로 발생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신고로 인하여 수입회복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신고자에게 그 기여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치료비, 전직·이사, 쟁송절차 등에 소요된 비용, 실직으로 인한 임금상당액 등을 보상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외에 공익 증진의 공로가 있음에도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포상금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국가 및 지자체의 수입회복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자 보상금제도는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가 입은 손해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신고활성화를 통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척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권익위법 제68조제2항)

● 보상금 지급 사유

①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②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③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④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⑤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 보상금 지급 절차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금의 감액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부패행위 사건 해결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 감액할 수 있음
- 감액은 30%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감액기준을 중복 적용하는 경우에는 총 감액비율이 보상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

● 부패행위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권익위법 제68조제1항)

● 포상금 지급요건

①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②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③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④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⑤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 지급 절차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중에서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경찰청, 검찰청) 등으로부터 정부포상대상자를 추천받아 심의하여 결정

● 포상금 지급기준

- 부패행위자에게 신분상 처분한 경우, 제도개선에 기여, 공공기관 손실방지, 기타 사유로 인정한 경우 1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 금품수수 등을 자진 신고한 경우 신고금액의 20%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

● 포상금 감액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내용의 정확성, 언론매체에 공개여부,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부패행위 사건 해결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포상금 감액할 수 있음

● 포상금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공익신고자 보상금 · 구조금 제도

공익신고자 보상금 제도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제1항)

● 지급요건

- 각 사항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해 수입회복 및 법률관계확정

① 벌칙·통고처분
② 몰수·추징금 부과
③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④ 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부과
⑤ 국세·지방세 부과
⑥ 부담금·가산금 부과
⑦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보상금 지급 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날부터 2년 이내 또는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 보상금 지급기준

-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금 감액사유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내용의 정확성, 언론매체에 공개여부,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공익침해행위 사건 해결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 감액할 수 있음

● 보상금 지급제한

- 공익침해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공익신고자 구조금 제도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제1항)

● 구조금 신청 사유

①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②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③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용된 비용
④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다만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⑤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다만 인·허가 등의 취소 및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및 그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제외

● 지급 절차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 구조금 산정기준

-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
-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 구조금의 지급제한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한 피해나 비용지출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신고자보호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가이드북



Ⅱ

신고단계별 업무담당자 유의사항

1. 신고 상담·접수 단계
2. 신고사건 심사·조사 단계
3. 신고사건 처리단계



Ⅱ 신고단계별 업무담당자 유의사항

1. 신고 상담 · 접수단계

(1) 신고상담시 초기신뢰 형성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고민하는 사람은 신고에 따른 신분노출 및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고사건은 공정하게 처리되고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는 초기 신뢰(Rapport)형성이 중요합니다.

상담시 체크포인트

상담 장소 선택

- 신고(예정)자의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상담장소 선택
- 외부인 또는 조사기관 직원의 출입이 잦지 않은 곳으로 선택
- 신고자가 안심할 수 있는 장소로 조용하고 방음이 충분한 곳으로 선택

상담 준비 및 자세

- 상담 실시 전에 차를 대접하고 일상적인 화제로 편안한 분위기 조성
- 신고자의 직업·외모 등으로 선입관을 갖지 않도록 하고, 노령자·연장자·부녀자 등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우
- 신고자의 상담내용을 충실히 메모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 하는 등 조사관이 진지하게 상담에 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도록 노력
- 상담과정에서 부드러운 언행과 태도를 유지하여 추후 억압적인 자세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
- 상담과정에서 조사관의 주관적인 견해 피력 등은 자제
- 신고자의 말을 끊지 말고 경청하며 신고내용의 처리결과를 예단하는 뉘앙스를 줄 수 있는 발언은 지양

▸▸ **신고자 보호제도 및 주의사항 안내**

•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신고접수를 망설이는 신고자에게 신고자의 비밀보장에 중점을 두고 안내(권익위법 제62조 제2항)
-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 권익위법에 의해 보호되는 신고의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을 안내
- 신고자 책임감면규정에 의해 신고자가 범죄에 관련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도 준용됨을 안내하여 신고 유도
- 신고내용의 감사·수사·조사에 협조한 자도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됨을 안내
- 신분보장 제도의 세부내용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또는 상담 전화를 통해 확인 또는 상담 가능함을 안내

▸▸ **신고자 주의사항 안내**

- 신고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이후 직장 내 처신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안내
- 신분상 비밀유지를 위해 신고자 자신도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

• 피신고자가 신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사실 및 처리과정 등에 관하여 전화 문의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소 ·주민번호·전화번호 등으로 신분이 정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설명

(2) 신고 접수시 요건 확인

부패, 행동강령위반 및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에서 정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자 보호제도의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해당요건 미충족시 신속하게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신분공개에 대한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하여 신분공개에 대한 신고자의 불안을 없애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접수시 체크포인트

형식적 요건 확인

-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등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신고
- 구술신고 및 전화상담의 경우 서면신고서를 작성토록 요구(단, 공익신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구술 신고시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해야함)
- 익명·기명신고의 경우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에 유의
- 형식 요건 누락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

실질적 요건 확인

- 신고내용이 부패행위·행동강령위반행위·공익침해행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개인적 고충·불만, 불친절 신고, 제도개선 요구 등은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가 아니므로 일반민원으로 처리
  -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울 때는 일단 보호되는 신고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에 적합

  ※ 공익침해 신고의 경우 신고내용이 180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일단 공익신고로 간주하여 처리
- 허위신고(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의 경우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신고의 증거제시 관련 주의사항

- 입증자료 제시의 대전제는 '신고자가 신고 전에 신고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조사할 필요성은 없다' 는 것임에 유의
- 증거제시가 불충분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
  - 증빙자료 제시가 불충분하였으나, 사안의 심각성·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고자가 이를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여부
  - 긴급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신고자가 증거제시 없이 부패행위등을 신고하였는지 여부
- 과도한 증거 요구가 신고를 거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 신고자가 신고 처리과정 중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
  - 신고 접수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을 받아 비동의시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하며, 향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사항 확인

- 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신고접수 기관 및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신고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안내

▸▸ 신고사건 처리기한 공지

- 사전에 신고사건 처리기한을 공지하고, 처리기한 및 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안내

▸▸ 언론제보 등 신고내용 공론화의 위험성 안내

- 언론제보 등으로 신고내용이 공론화되는 경우 신고와는 별도의 신분상 불이익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분쟁의 조정·합의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짐을 안내

신고자의 언론제보·인터뷰의 문제점

- 언론기관 및 시민단체에 신고한 경우 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기관이 아니므로 신고자보호제도 적용이 어려움

  ※ 유엔반부패협약에 따르면 언론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신고 후 언론사 제보 및 인터뷰의 경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으며, 별도의 징계사유 등 신고와 무관한 신분상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의 중요성

신고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신분이 노출된 경우 신고자의 신분이 불안해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담당자도 징계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은 신고자 비밀보장의 첫걸음으로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익위는 신고접수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을 받고, 이후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거침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 확인서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위원회 심사·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동의( ) ② 부동의( ) 2. 조사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송부)하게 됩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동의( ) ② 부동의( )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 내역	1. 위원회 심사·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동의( ) ② 부동의( ) 2. 조사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송부)하게 됩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동의( ) ② 부동의( )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확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 신고사건 심사·조사단계

(1) 신고의 적법성 확인

신고자 보호의 출발점은 보호대상이 되는 '이 법에 따른 신고'인지 여부로 형식요건 및 실질요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법에 따른 신고란

① 권익위법상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

② 공익침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등에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부패행위(권익위법 제2조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직자 행동강령(권익위법 제8조제2항)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대통령령)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청탁의 금지	• 이권개입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제한 • 공용물의 사적사용 제한 •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 금품 등을 주는 행위 금지	• 외부강의 등의 신고 • 금전의 차용 금지 • 경조사 통지 및 금액 제한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1호)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 공익신고 대상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의 적법성 확인을 위한 체크포인트

신고의 형식요건 충족여부 확인

- 기명·서면신고 여부
  - 신고는 기명 및 서면에 의한 신고가 원칙이나, 내규로 익명·구두 신고를 허용하기도 함
  - 익명신고자가 신고자 색출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장하는 경우 신고자 비밀 누설 관점에서 조사필요성 여부에 대한 별도 검토 필요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확인
- 부정목적 신고여부는 정황 증거 외에 명확한 금품요구 증거 등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신고의 실질요건 충족여부 확인

- 권위익법 제2조의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권익위법 제67조의 행동강령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구체적 조문 확인
- 180개 법률 위반여부 및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 확인

▸▸ 제시된 증거 검토

-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가 제3자도 부정행위의 발생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판단 근거가 되는지 확인
- 신고의 사적목적 파악과 관련하여 증거자료 수집에 있어 신고자가 타인을 기망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있는지 검토
- 증거자료를 제시한 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 유의

Tip 익명신고자 보호가능성!

신고는 기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기관에서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보호되는 신고는 아니나, 익명신고인 경우에도 신고자 색출 또는 그 신원을 밝히려는 시도나 피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Tip 구두신고자 보호가능성!

권익위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구두신고는 보호대상인 신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등 내규에서 구두신고를 허용한 경우 보호대상인 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보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이 신고서에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인 신고에 해당합니다.

(2) 심사 및 조사과정의 유의사항

신고사항을 확인 및 조사하기 위해 신고자, 참고인, 이해관계인,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청취,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은 가급적 업무담당자와 결재권자만 알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하고, 신고내용에 신고자 등의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에게 사건처리 상황 및 주의사항을 신속히 알려주어 신고자와의 신뢰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고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고심사·조사과정의 유의사항 체크포인트

▸▸신고사건 관리시 주의사항

- 신고서 및 사건기록 등은 가급적 업무담당자와 결재권자만 알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문서고 등에 별도 관리
  - 온라인·오프라인 사건에 접근·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업무담당자와 결재권자만 보유
- 전산담당자나 임·직원 등이 신고내용에 접근·열람할 수 없도록 시스템 구축·관리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시스템 비밀번호는 업무담당자만 숙지
  - 업무담당자와 결재권자 외의 사람이 신고내용에 접근·열람하였는지 여부를 항시 확인
- 신고내용만으로 신고자의 신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고내용 등도 블라인드로 처리하여 관리

▸▸현장조사시 주의사항

- 기관방문시 조사목적 및 신고자보호 관련제도를 설명하고 협조 당부(필요시 비밀준수 서약서 징구)
- 현장조사시 신고서, 신고상담처리부 등의 서류를 복사해서 휴대해서는 안되며, 조사관만이 알 수 있도록 요약해서 참고
- 관련자 조사를 위해 현장방문시 휴대용 노트북 및 프린터를 사용하되, 부득이 관련기관 장비

(컴퓨터, 프린터, 팩스 등) 사용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인쇄컴퓨터 사용내역 삭제 등)

▶▶조사과정에서 증거확보시 주의사항

- 소속기관의 설명 또는 제출자료 검토시 신고자에 대한 악의적 평가로 신고자를 매도하지 않는지 유의
- 이해관계인·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 협조자도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됨을 안내하고, 협조를 구함

▶▶신고자에게 안내할 사항

- 처리상황에 대한 주기적 통보
  - 신고자가 처리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처리결과를 속단하여 언론기관 등에 제보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통보하여 신고사건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는 신뢰감 형성
  - 사건처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신고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통지
- 신고자에게 연락시 신고자의 비밀보장에 유의
  - 신고자의 사무실 전화가 아닌 휴대폰 등으로 연락 취할 것
  -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근무시간 외에 통화할 것
  - 조사결과 통보문서 등 관련 공문은 신고자의 직장이 아닌 자택으로 발송

의도치 않은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

- 현장방문하여 신고사건 조사 중 컴퓨터 및 프린터 사용시 연결상태를 확인 하지 못해 공용 프린터기로 신고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인쇄되어 피신고인에게 신고인 신분 노출
- 신고서 및 신고상담내용을 가지고 현장방문 중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관계기관 직원이 신고서를 보게되어 신고자의 신분 노출

3. 신고사건 처리 단계

(1) 신고사건의 처리결과 확인

조사기관은 신고사건을 확인하고 그 결과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신고인 경우 개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수사·조사결과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당해 신고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신고가 아니라고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사건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라도 적법한 신고의 경우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이므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보호대상이 아닌 신고로 밝혀지더라도 기타 권리구제가 있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주도록 합니다.

신고처리 결과 확인시 체크포인트

▸▸**신고사건 조사 및 처리시 절차 확인**

- 조사기관에 접수된 신고인 경우
  -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관할이 아닌 신고는 해당 조사기관으로 이송하고 신고자에게 이송 사실 등을 통지
  -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종결처리
- 위원회 등으로부터 이첩받은 신고인 경우
  - 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신고인 경우 조사 종결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사결과 통보
  - 이첩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이첩
- 조사기관 이첩 신고사항의 자의적 이송금지
  - 조사기관은 이첩받은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타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안됨
  -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신고사건 이송

▸▸허위신고 확인 관점에서 신고처리결과 확인

- 허위신고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등 해당 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없이 무분별하게 제기하는 신고도 보호대상에서 제외
- 신고당시 객관적으로 부패행위 등의 외관을 띠고 있다면 성실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로 파악
  - 신고사건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경우라도 적법한 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책임은 감면됨에 유의

▸▸보호대상이 아닌 신고인 경우

- 보호대상이 아닌 신고인 경우 노동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기타 권리구제가 있는 경우 필요한 절차 안내

(2) 신고사건 기관 송부 및 이첩시 유의사항

신고사건 확인 결과 해당 기관에 송부하거나, 수사기관 및 조사기관에 이첩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자의 신분공개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부동의 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관련 기관에 송부 및 이첩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신분이 노출된 경우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 등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기관의 조사절차에서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한 경우 인적사항은 신원관리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이를 다른 직원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법 제64조 및 제88조, 동법시행령 제69조

- 신고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징계 등에 처함
- 신변보호 또는 특별보호를 받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경우 위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 등에 처함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벌칙)

신고자 의사에 반해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신고사건 송부·이첩시 체크포인트

▸▸신고자 신분노출에 유의

- 신고사건을 조사기관으로 이첩 또는 관계기관으로 송부시 신고자가 신분공개를 원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 신분 비공개
  - 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익명처리하고 사본으로 송부
  -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인적사항이 아니더라도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은 익명처리하여 송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등 조사기관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조치를 신청 할 수 있음
-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내용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법원·변호인 등으로부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검사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됨

10조(영상물 촬영)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시 판사는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수 있으며 영상물에 수록된 범죄신고자 등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음

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 가능

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법원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및 변호인과 당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음

부패신고 사건 처리절차

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한 신고사건 처리절차

처리기관	처리단계	처리내용
권익위	상담·접수	- 신고상담 및 접수 - 신고인 진술청취 및 제출자료 검토
	조사·확인	- 신고접수 후 30일 이내 사실관계 확인
	신고서 이첩(고발)	- 조사기관에 조사요구 - 고위공직자는 검찰에 고발 - 관계기관에 송부
조사기관	조사실시	-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서 조사
	조사결과 통보	- 60일 이내 조사 종결 - 위원회에 10일이내 결과 통보
	신고처리 결과통보	-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 통보
권익위	재정신청/ 재조사 요구	-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은 재정신청 - 재조사 요구

조사기관에 접수한 신고사건 처리절차

처리기관	처리단계	처리내용
조사기관	상담·접수	- 신고상담 및 접수 - 신고인 진술청취 및 제출자료 검토 - 신분공개동의여부 확인 - 부패신고가 아님이 명백한 허위신고의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
	조사·확인	-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인지 확인
	처리	- 조사 종결 - 관계기관에 송부
	신고처리 결과 통보	-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 통보

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신고사건 처리절차

처리기관	처리단계	처리내용
권익위	이첩	-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 등에 이첩
조사기관	조사실시	-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서 조사
	조사결과 통보	- 60일 이내 조사 종결 - 위원회에 10일이내 결과 통보
	신고처리 결과통보	-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 통보 - 권익위에 조사 결과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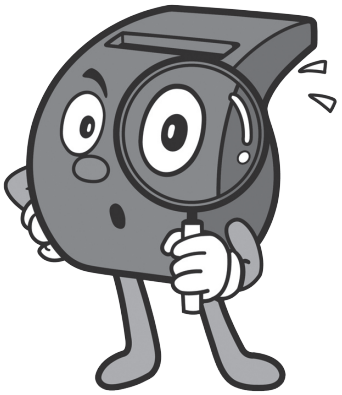
공익신고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처리절차

처리기관	처리단계	처리내용
접수기관	상담·접수	- 신고상담 및 접수 -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내용 등 확인 - 신분공개동의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 공익신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
	조사·확인	- 180개 법률 위반 여부 확인 -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 확인
	처리	- 조사권 없는 경우 · 조사기관 등에 송부 · 신고자에게 송부 사실 등 통지
		- 조사권 있는 경우 ·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 관할이 아닌 경우 해당기관으로 이송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 신고자에게 종결 사실 및 사유 등 통보

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신고사건 처리절차

처리기관	처리단계	처리내용
권익위	이첩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을 확인 - 180개 법률 위반 여부 확인 -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 확인
조사기관	조사실시	-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조사결과 통보	- 위원회에 결과 통보 -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등에 이첩
	신고처리 결과통보	-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 통보 - 권익위에 조사 결과 통보



신고단계별 업무담당자 유의사항

신고자보호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가이드북



Ⅲ

보호사건 발생시 업무담당자 유의사항

1. 보호사건 상담·접수 단계
2. 보호사건 조사·확인 단계
3. 보호사건 처리단계



Ⅲ 보호사건 발생시 업무담당자 유의사항

1. 상담·접수 단계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거나 생명·신체상의 불안이 있는 경우, 의사에 반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등에 대한 상담·접수시 체크포인트

▸▸상담·접수시 확인사항

- 상담시 신고자의 입장에서 경청하되,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로 중립적 자세 견지
- 보호조치 등의 요구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

▸▸보상금·포상금 문의 시 권익위로 안내

- 보상금·포상금 제도에 대해 신고자가 문의 시 자세한 내용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권익위 보호보상과, 공익보호지원과에 상담 요청하도록 안내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권익위에 신고한 경우만 그 대상이 되고 포상금은 권익위의 재량적 처분으로 신고자의 신청이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안내
- 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에 대하여 지나친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향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주의

2. 보호사건 조사·확인 단계

(1) 보호대상 신고인지 확인

보호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신고의 동기·목적, 요구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를 토대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의 동기파악

신고자의 신고 동기·목적은 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 요건은 아니나, 보호조치 수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합니다. 이는 허위신고 및 부정목적 신고 여부에 따라 접수된 신고가 보호대상이 되는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고 동기 및 숨겨진 신고 목적을 고려하여 보호조치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패신고의 경우

- 허위신고의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으나 부정목적의 신고가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 요건이 아니라는 명시적 규정 없음(권익위법 제57조)

▸▸공익신고의 경우

-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정당한 공익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명문화(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다만, 이 경우에도 부정목적의 신고여부를 신고 접수 시의 정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명확한 금품요구 증거 등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

›› 신고의 적법성 확인

보호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의 형식요건 및 방법·일시 등을 확인하여 적법한 신고인지 판단합니다. 즉, 제기된 신고가 부패행위, 행동강령위반 및 공익침해 행위 개념범위에 해당하며 적법한 신고기관에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시 불이익처분에 대한 판결·결정 등에서 확정된 사항,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조사가 제한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익위법 제29조제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사·재판 및 형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0조제2항제6호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보호대상 신고인지 확인시 체크포인트

▸▸신고접수 사실여부 확인

• 법에서 정한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의 개념 범위에 해당되는 사안을 위원회, 소속된 공공기관 등에 신고했는지 여부 확인

▸▸신고의 배경·동기 파악

• 신고자가 처한 상황

- 본인이 직접 알게된 사실을 신고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알게 된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 확인
- 다른 사람으로부터 알게 된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그 정보가 신고자의 직위·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 확인

- 신고자가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공익목적 이외에 숨겨진 신고목적을 언급(암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신고자가 신고취하 등을 이유로 피신고자나 소속기관에 금품 또는 승진·계약 연장 등의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처분 절차의 진행 유무 확인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정보·자료의 취득을 위하여 타인을 기망한 사실여부 확인
- 신고내용이 명백히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소속기관 제출자료 검토
-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신고자를 부당하게 매도하는지 여부 검토
- 조사기관은 위원회의 진술요구 및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불복구제절차 진행여부 확인

•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결정·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가 제한되어 종결사유에 해당됨



(2) 신고에 따른 불이익 발생여부 확인

›› 신고에 따른 불이익 예상여부 판단

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예방적 신분보장 조치가 필요합니다. 신고에 따른 불이익 예상여부 판단시 신고와 무관한 사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사전예방적 조치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중단 가능성 등 신고와 불이익간의 정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전예방적 조치의 궁극적 목적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잠정적 중지가 아닌 중단임에 유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권익위법 제62조(신분보장 등)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이미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분보장 조치요구 가능

불이익의 유형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의미

	부패신고 등	공익신고
근거 법령	권익위법 제62조 및 동법 별표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내용	• 신분상 불이익·근무조건상차별 · 파면, 해고 등 신분상실 · 직위해제·강등·승진 및 이에 준하는 조치 · 전보·전출 및 이에 준하는 조치 · 임금의 차별지급, 집단 따돌림 업무미부여 등 근무조건상 차별로 세분화 하고 있음 •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 주의대상자명단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불이익 발생예상 확인시 체크포인트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파악

- 피신고자가 신고자의 인사조치 또는 평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인지 확인
- 신고자가 최근 성과평가·승진 등 인사정책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실여부 확인
- 신고와 별개의 징계사유 존재 또는 업무능력 부족·성과 미달 등 신고와 무관한 사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할 가능성 확인
- 내부신고자로 의심받는 상황인지 확인
- 신고자가 계약직근로자인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평가·심리가 예정된 경우 이에 대하여 사전에 신분보장 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인지 확인



››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발생 여부 판단

불이익 조치에는 공식적·정형적인 불이익과 비공식적·비정형적 불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공식적·전형적인 불이익 조치의 경우 불이익 발생 여부 판단이 용이하여 신고자 보호가 쉽게 이뤄질 수 있으나, 비공식적·비정형적 불이익의 경우 그 판단이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와 그로인한 불이익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및 실질적 관련성 등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불이익 발생 여부 판단시 체크포인트

▸▸신고와 신고로 인한 불이익간 인과관계 파악

- 신고와 신분상 불이익간 시간적 선후관계파악
  - 신고가 있었고 신고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가해졌는지 확인
  - 신고자 소속기관에서 신고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할만큼 충분한 시간이 경과했는지 확인
  -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신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오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 신고와 신고로 인한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했는지 확인
  - 신고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통상적인 징계수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파악
  -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사유가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만큼 사소하지 않은지 파악

3. 보호사건 처리단계 : 적절한 조치 결정

›› 신고로 인해 불이익 발생시 후속조치

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불이익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그 유형에 따라 신분보장조치, 신변보호 요청 및 비밀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권익위원회는 관련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조치, 신변보호 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반시 징계,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 결정

- 화해의 권고 등

  신고자의 원상회복 조치요구 수준, 피신고자의 권익위 원상회복 조치결정의 수용가능성, 권익위의 결정유형에 따른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화해 가능성을 판단해 화해안 제시

- 보호조치 결정

  보호조치 신청이 타당한 경우 보호조치 결정. 이때 해당기관은 위원의 보호조치 결정을 따라야 하며, 위반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기각결정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보호신청 기각결정

신고자 보호조치 및 위반시 처벌기준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시 처벌
부패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	비밀보장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징계권자에게 징계요청
		인적사항 공개 금지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분보장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금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분상, 근무조건상 차별금지 위반시 위원회는 조치요구 가능	위원회 요구 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	위원회 요구 미행시 1천만원 과태료
		권익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방해·거부 또는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신변보호 조치		
	책임감면		
	협조자도 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		
공익 침해 신고	신고방해 금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비밀보장	신고자 비밀보장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피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보호조치	신분상·경제적·행정적으로 불이익한 조치 금지	신분상 불이익 조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그 외 불이익 조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시 위원회에 보호요청	위원회의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조사기관에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 제출 등 요구	거부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변보호조치		
	책임감면 및 손해배상 금지		
	협조자도 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		

위원회 보호사건 업무처리 절차

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한 신고사건 처리절차

처리기관	처리단계	처리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 상담·접수	• 보호 상담 및 접수 • 요구인 진술청취 및 제출자료 검토
	조사·확인	• 조사계획 수립 • 관련 기관 자료제출 요구 및 참고인 등 진술 청취
	의안 작성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의안 작성 및 위원회 상정
	결정통보	•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신분보장조치 요구, 신분공개자 등에게 징계요구 등 • 요구인에게 조치결과 통보
	조치결과 확인	• 조치결과 이행여부에 따라 과태료, 형사처벌 절차 진행

신고자보호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가이드북



Ⅳ

신고자 보호 사례



Ⅳ 신고자 보호 사례

비밀보장



사례 1

사건개요

신고자가 00부 국민신문고에 00관리소 직원들의 행동강령위반을 신고한 후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져 소속기업을 퇴사함

조치결과

조사결과 00부 직원이 업무처리와 관련없는 제3자에게 신고내용을 전달하고, 피신고자와 소속기업까지 신고내용을 유출하여 관련자 4명에 대한 징계 요구(1명견책, 3명 주의처분)

사례 2

사건개요

소속기관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상사의 허위출장 지시 및 예산의 부당집행 등에 대해 상담한 후 자체 특별감사 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되어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신분공개여부확인 요구

조치결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등의 특별한 보호조치가 요구됨에도 신고자 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관련기관에 대해 주의 촉구를 통보

사례 3

사건개요

소속기관에 출장비 횡령관련 비리신고건과 관련 신고자가 소속기관의 자체 감사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공개되었다고 주장하며 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

조치결과

소속기관 검사역이 시행한 문서에서 신고자의 고충처리를 위해 고충인의 성명, 감사이유 및 내용 등을 언급한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소속기관에 주의촉구 통보

사례 4

사건개요

00회의 산사태 복구공사비 과다 계상 의혹 등을 00시에 신고한 이후, 신분이 공개되어 신고 13시간 만에 피신고기관의 신고 취하 종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신고자 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

조치결과

최초 신고를 접수 받은 00시 직원이 피신고기관인 00회 직원에게 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하였고, 00회 직원이 제3자에게 재차 신분을 공개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사례 5

사건개요

00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신분비공개를 요청하면서 00식당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00군청에 신고한 이후, 신분이 공개되어 비난을 받자 이를 견디지 못해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고자 신분비공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

조치결과

00군청 소속 민원접수 담당자가 업무관련성이 없는 직원에게 신고내용을 공개하였으며, 피신고자에게도 신고내용을 알려준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00군청에 징계요구

신분보장 등 보호조치요구



사례 1

사건개요

00공사 인사담당 임직원 3명(이사, 인사부장, 인사팀장)이 부패행위 고발에 조력한 자들을 서울 본사에서 강릉 · 창원지사로 하향전보

조치결과

신고 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가한 00공사 이사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인사부장과 임사팀장에 대하여 각각 징계권자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함과 동시에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사례 2

사건개요

00시 보건소 공무원들이 시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을 무료검진받게 했다는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 후 소속기관에서 하향전보, 근무평정에서 차별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음

조치결과

안전행정부에 인사교류를 요구하고, 00시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

사례 3

사건개요

00광역시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이 특별채용시험에서 허위의 공직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임용된 혐의를 외부기관 등에 6회에 걸쳐 진정 ·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 받음

조치결과

위원회 조사 진행 중 소청심사위원회에서 1개월 감봉처분을 취소하여 원상회복 조치되었으며, 소속 기관장에 대해서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사례 4

사건개요

00평가원 인사담당부서장이 근무성적평가시 평가를 조작 · 변조하였고, 승진 임용자격 미달자를 임의로 승진시킨 의혹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

조치결과

평가원장이 신고인에 대하여 근무조건상의 차별과 신분상 불이익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평가원장이 행한 해임징계처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여 평가원은 해임처분을 취소하였고 신고인의 신분이 원상회복 됨

사례 5

사건개요

00부 등 47개 정부기관 호봉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연구직 ·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호봉을 과다 책정함으로써 국가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내용을 신고한 신고자가 소속기관으로부터 해외 학회참석 취소 및 지방으로 전보조치 등을 당하자 전보조치 취소 및 타 기관으로의 인사교류 요구

조치결과

신고자에게 가한 학회참석 취소 및 지방으로의 전보조치를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보아 소속기관장에게 전보 취소를 요구하여 원 소속기관으로 원상복귀 되었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타 부처로의 전출을 위한 인사교류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함

사례 6

사건개요

00역 주차장 정산소의 횡령 의혹을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신고한 신고자가 자택과 가까운 근무지에서 시 · 도 경계를 벗어난 원거리에 전보조치되자 원 근무지로의 원상회복 요구

조치결과

관계자에게 위원회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을 통해 신고자의 원상회복 조치 또는 그와 유사한 조치를 요구한 바, 요구인의 자택근처로 (재)전보조치 이뤄짐

사례 7

사건개요

소속기관 상급자가 특정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계약내용의 변경을 지시한 사실 등을 자체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실 · 팀장급 직위에서 직원으로 사실상 강등 조치되고, 계약연장이 거부되자 원상회복 요구

조치결과

신고인에 대한 계약연장거부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처분으로 인정되므로 00원장에게 계약연장 조치(1년)를 요구함



신변보호조치



사례 1

사건개요

00부대 시설공사 등과 관련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진술 기타 방법 등으로 위원회 조사확인과정에 조력하였는데 그 후 피신고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지속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딸이 협박 등을 당한다고 주장하며 신변보호조치 요구

조치결과

신고협조자가 피신고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신고자에 대한 협박 등으로 인해 정기적인 진료 및 의사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구

사례 2

사건개요

예산낭비 등 3건의 부패사건을 신고한 후 언론보도 등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자 신변불안을 호소하며 신변보호조치요구

조치결과

신고자는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조직적인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신고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할경찰관서장에 긴급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사례 3

사건개요

자재 구매단가 부당인상 의혹을 위원회에 신고한 요구인에 대하여 피신고자인 해당업체 사장 등이 신고취하서 제출을 강요하였고, 조직폭력배 등이 룸살롱서 만나자며 신고 취하서를 각하형식으로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등 신변상 위협을 받자, 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 요구

조치결과

조직폭력배 등이 위해를 가할 듯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요구인은 거주지 이전을 고려중이며, 조직폭력배의 주요 활동장소인 특정 룸살롱 등으로 불러내는 등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고 인정되어 신고자 본인에 대한 거주지의 주기적 순찰 등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신고자 보호 관련 법원판례

부패신고자 보호조치 관련판례

사건개요

신고인이 소속된 기관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골프장, 단란주점 등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50만원 또는 30만원 씩 갹출, 활동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경영진이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부패행위를 00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파면)을 받아 보호조치 요구

조치결과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로 이 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에 해당하며, 위 신고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직접적 ·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원장에게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자 ♠♠원장이 소송제기

주요판결내용

● 쟁점1

- ♠♠원장은 00부 정책보좌관에게 신고한 신고서를 토대로 장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이후 신고서를 폐기하였으므로 신고의 효력 없다고 주장
- 법원은 신고서를 토대로 장관에게 보고 후 신고서를 폐기하였더라도 상급기관에 부팽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
- 신고서 폐기는 신고 이후의 행위로 신고에 영향 없음

● 쟁점2

- 원고는 자금갹출 지시사실도 없고, 자금갹출 사실을 몰랐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
- 감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으므로 허위신고로 볼수 없고, 임원의 지시에 의해 갹출이 이뤄진 이상 자발적으로 갹출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허위사실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행동강령위반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판례

사건개요

신고인이 소속기관 상급자가 특정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예약내용의 변경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알선 · 청탁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자체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등 조치 및 계약연장 거부를 당하자 이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요구

조치결과

00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로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이며,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직접 ·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인에 대한 계약연장조치를 요구하자 00원장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제기

주요판결내용



● **쟁점1**

- 신고자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한 구두신고도 신고로 인정
  ※ 권익위가 아닌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에의 신고는 해당 기관의 규정을 따르므로 신고 방법에 따른 제한 없음
- 신고과정에 조력한 자도 협조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판시

● **쟁점2**

- 신고자가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 요구 후 원고의 종용으로 권익위에 신고취하서를 제출하고 그 대가로 6개월간 초빙계약직으로 다시 임용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 해소 여부
- 6개월 초빙계약직으로 임용한 것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완전히 원상회복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 · 요구 취하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요구처분 가능함
  ※ 본 판결은 현실적으로 피신고자 또는 소속기관이 관련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신고자 등에게 신고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취하하도록 종용한 사례임을 고려하여 판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판례

사건개요

00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원아의 급·간식비를 횡령한 행위를 관할 군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근로계약 만료 및 채용시험을 이용해 신청인을 불합격시키자 이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요구

조치결과

원장의 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고, 공익신고 이후 실시된 보육교사 채용시험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총점 계산방식을 왜곡하여 신청인을 불합격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불합격조치의 취소 및 원상회복 요구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제기

주요판결내용

● **쟁점1**

– 법의 취지가 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이익조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 도 불이익에 포함

● **쟁점2**

- 신청인이 공익신고 약 40일 후 면접에서 탈락한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공익신고가 탈락에 양향을 미쳤다고 보여짐
-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줄 의사가 있었고 실제 면접 기타점수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준 것을 고려하면 공익신고를 원인으로 채용절차에서 탈락한 것을 불이익 조치로 보는 것은 합리적임

부패신고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개요

신고인이 품위손상과 부적절한 인사 등에 대해 신고하였으나, 신고문서가 유출되어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을 요구

조치결과

신고자가 가명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신고내용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고죄에 해당하는 허위신고임이 밝혀져 신분보장조치 신청을 종결처리하자 심판제기

주요판결내용



● **쟁점1**

- 신고인이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함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토록 규정

● **쟁점2**

- 법원의 판결로 신고인의 신고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함이 밝혀졌으므로 본 신고는 권익위법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부패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신고자보호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가이드북



V

별 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권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3〉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제2조(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권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권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권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25〉 1. 국민의 권리보호 ·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 · 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 · 홍보 계획의 수립 · 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 · 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 관리 및 분석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 · 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 ·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 · 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 · 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 ·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 처리 등)**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 · 예규 · 고시 · 공고와 조례 · 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권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 · 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 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 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 실태 확인 · 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 · 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 · 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 · 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 · 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인에 대한 분석 · 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 · 기업 · 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 · 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 · 처리절차 · 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권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법령등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54조(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권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는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56조(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권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법관 및 검사 5. 장관급 장교 6. 국회의원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제56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권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이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공공기관은 위원회에서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조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처리)** ① 조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사기관이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 받은 기관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권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2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법 제6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4조(재정신청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른 재정신청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권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	**제65조(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보장조치, 인·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적사항·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권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	**제66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또는 관련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요구인의 신분보장조치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권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4조(신변보호 등) ①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직·전출·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9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친족·동거인의 인적사항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법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거나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0조(신변보호) ① 법 제6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

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권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1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5.28〉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④ 제77조제2항, 제80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법 제6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권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로 구성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5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 또는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상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권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5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80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보상금은 제7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권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3조(보상금의 환수)**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 등을 취소·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업무·효력·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	**제4조(정책 수립·시행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행정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

제2장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②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을 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공익신고 내용과 공익침해행위의 관계
4.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
5.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6. 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7.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조사·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	**제8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등에 이첩(移牒)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의 이첩)** ① 위원회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관 2.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과 관련 기관은 공익신고가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공공기관 송부)**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로 받은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사항을 공공기관에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고사항이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기관등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것으로 보고, 공익침해행위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기관등의 처리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등은 그 공익신고를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조사기관등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으로 이첩한 신고내용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기관등에 요청할 수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대표자등, 위원회, 조사기관등 및 국회의원등은 공익신고의 접수·이첩·송부·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신변보호조치)**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변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해제 사실 및 신변보호조치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요구자와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 ①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조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조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권고(이하 "보호조치결정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轉職) 등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공익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 사실을 보호조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불이익조치 금지) ①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한 경우에는 그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권고 사실을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자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기관은 위원회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치결과 등의 통보) 위원회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은 자는 요구·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2. 출석 및 의견 진술
3. 소속 직원의 파견·공동조사 및 자문
4. 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5. 법률 상담·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7.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의2(정치 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정치운동등"이라 한다)를 지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이의제기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③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의제기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2.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3.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일시 및 장소 4. 정치운동등의 지시 내용 5. 이의제기의 취지와 이유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①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	
2.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정치 운동	
3. 「군형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치 관여	
② 국가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 및 「군형법」 제8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상금 및 구조금	**제4장 보상금 및 구조금**
제26조(보상금) ①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제21조(보상금 지급 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판결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말한다.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正本)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결정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28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보상신청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① 하나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공익신고를 한 경우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공익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각각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신고자별로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제26조(구조금 산정 기준)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9조(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구조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보상금·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이 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5장 보칙**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확인·이첩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에 관한 사 ③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고자보호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가이드북



발 행 일	2014. 06
인 쇄	2014. 06
발 행 처	국민권익위원회 / 심사기획과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본관
전 화	02-360-6604
팩 스	02-360-3550

제작 · 인쇄 쵸이스디자인 02-2275-2633